



제 779 호
1980. 5.19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편집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- ◎ 조 례
 - 제 1426 호: 서울특별시학생 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 3
- ◎ 훈 령
 - 제 527 호: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... 3
- ◎ 교 시
 - 제 169 호: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..... 4
 - 제 170 호: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시행허가원부변경... 4
 - 제 171 호: 도시계획사업(공용의청사)시행허가..... 5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제 159 호 :	주택 개량 을 위 한 재 개발 사업 관 리 처 분 제 획 및 건 축 제 획 공 랑 공 고	6
제 160 호 :	도 시 제 획 사 업 (화 불 자 동 차 정 류 장) 시 행 허 가 실 시 제 획 공 랑 공 고	6
제 161 호 :	도 시 제 획 사 업 (여 객 자 동 차 정 류 장) 시 행 허 가 실 시 제 획 공 랑 공 고	8
제 162 호 :	도 시 제 획 사 업 실 시 제 획 변 경 (추 가) 공 랑 공 고	8
제 163 호 :	도 시 제 획 사 업 (공 원) 공 사 완 료 공 고	10
제 164 호 :	전 기 용 품 제 조 업 허 가 취 소	11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

1980. 5. 19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26 호

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
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(체육자료정보수집, 신기술도입보급, 체육전시) 와 체육교사연수, 체육특기학생훈련, 체육기능향상 및 실기지도등 체육교육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에 학생체육관 (이하 "학생체육관" 이라한다) 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중 "강남구 삼성동" 을 "강동구잠실 1 동" 으로 한다.

부 칙 (80. 5. 19)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리대책위원회규정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0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團

◎ 서울특별시훈령 제 527 호

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
대책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회 규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 제 3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기획관리관, 보건사회국장, 도시계획국장, 건축국장, 주택국장, 공원녹지국장, 도로국장, 하수국장, 수도국장, 감사관, 경찰국제 1 담당관, 해당구청장, 해당주민대표, 서울시도시계획위원, 주택분과위원, 시민복지분과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구성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65 호 (80.5.15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
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지한다.

2.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5.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중로	1류	64미터	은평구응암동 82	은평구녹번동 79	

※ 별첨도면과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0 호
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원부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62 (79.8.10) 호로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된 시흥동 산 84-16 번지상에 대하여 일부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. 관계조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,
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5.19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 시흥동 산 84-16
- 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
- 다. 사업시행면적 : 당초 - 2,956 m²
변경 - 3,081 m²

라. 사업규모변경사항 : 별첨 설계도서
와 같음.
마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서울시구로
구시흥동 270-2 옥성운수 (주)
대표 : 김 상 문
사.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

바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당초 : 착공 - 79. 8.30
준공예정일 - 80. 4.30
변경 : 착공 - 79. 8.30
준공예정일 - 80. 6.30

소	재	지	필	지	지	목	지	적	소	유	자	비	고	
시	흥	동	산	84-16	1	필지	임	야	3,081	m ²	옥성운수 (주)	대표	김상문	여객자동차 정류장용지

아. 토지이해관계인 주소성명
서울시구로구 시흥동 270-2
옥성운수 (주) 대표 : 김상문

앞에게 보인다.

1980. 5.19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71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용
의청사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79 환 (78.3.7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
- 1) 사업시행지 : 종로구 세종로 84-4 일대
- 2)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
- 3) 사업시행면적 : 10,241.4 m² (3,098 평)
- 4)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채신부장관
- 5)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
나. 준공예정년월일 : 1983. 6.30
- 6)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별첨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
처분계획및건축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3 호 (80.2.12)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후암1구역 (용산구후암동 95,96,101번지일대 (3,435명) 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42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부합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.
3. 관리처분계획은 개별 통보하며 관계도서는 건축국 재개발 2 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 열람하고 있다.

1980. 5. 19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60 호

도시계획사업 (화물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84 호 (79.11.23) 로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화물자동차정류장)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(시행허가)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신월동 산 61-61 서부트럭 터미널주식회사 (602-5563)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(공 랑 개 요)

1. 사업시행지 : 강서구신정동산 135-1 의 12 필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화물자동차정류장)
명칭 : 공용화물자동차정류장
3. 사업의규모 : 총 34,500 평중 당해 1 차사업 12,066 평

4. 사업시행자 : 주식회사 서부트럭
터미널 대표이사 김 용채.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가. 착수에정일 : 80. 6. .

나. 준공예정일 : 80. 12. 31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
제 14조의 관계인 주소 성명 : 다음

토지 조서 (화물자동차정류장)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소유자 및 이해관계인	
				주 소	성 명
강서구신정동	743	답	2,797 중 1,216	신정동 670	고 광 택
"	811	"	431	개봉동 44	김 영 택
"	811-1	"	111	"	"
"	811-2	"	1,051	"	"
"	812	대	4,132	영등포구오류동 11	이 규 상
"			(근저당권)	오류동 39-5	오류1동마을 금고이사장
"	813	답	3,445 중 1,182	마포구서교동 34-8	김 영 정
"	915	전	3,491 중 277	용산구원효로 2가 61-15	사단법인 경주경제진흥회
"	산 134	임	10,909	영등포구도림동 160	손 득 성
"	산 135-1	"	20,039 중 16,460	등촌동 400-21	차 기 순
"	산 135-2	"	1,686	영등포구오류동 11	이 규 상
"	산 143	"	10,000 중 1,088	용산구원효로 2가 61-15	사단법인경주 경제진흥회
"	산 142-1	"	4,661 중 947	성북구성북동 179-37	강 신 주
"	산 136-1	"	396	국유지	산 립 청
계			63,149 중 39,886㎡ (12,066평)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61 호
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시행허가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6 호 (78. 11.28) 및 동고시 제 647 호 (78. 12.13) 로 결정 및 지지승인된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추가 확장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(시행허가)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강서구 가양동 54-8 김포교통 주식회사에 비취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년 5월 19일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강서구 가양동 54-8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명 칭 : 김포교통
3. 사업의규모 : 총 3,038 m^2 중 추가 확장 부분 800 m^2
4. 사업시행자 : 강서구 가양동 54-8 김포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기만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 : 1980. 6.
나. 준공예정일 : 1980. 9. 30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강서구 가양동 54-8 (2,403 m^2 중 800 m^2)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14 조의 관계인 주소 성명

위 치	지 번	지 복	지 적	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소성명	비 고
강 서 구	54-8	대	2,403 m^2 중	강서구가양동 54-8 김포교통(주)	
가 양 동			잔여부분 800 m^2	중구남대문로 1가4 조흥은행 (주)	근저당권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62 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
(추가) 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 64 호 (78.3.29.)

동 제 320 호 (78.10.25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5 호 (79.9.20) 로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 (지지승인) 된 바 있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- 막계리 2 번지의 1,556 필지, 광로 56, 71, 55 호

하리 352 번지 광장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서울대공원건설)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 (추가)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과천면 회의실 및 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3. 본 공고에 대하여 별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되는 토지소유자 다. 변경사업의 규모

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.

1980. 5. .
서울 특별시 장

변경 (추가) 공람 개요
가. 사업시행 위치
1)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2 번지의 1,556 필지
2)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하리 352 일대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류 - 공원 도로, 광장 조성
2) 명칭 - 서울대공원건설

시 설 규 모	당 초	변 경 (추 가)	비 고
시 설 구 역 면 적	1,460,176.7 평	1,461,034.7 평	858 명 증가
광로 56 호	폭 50 미터	폭 50 미터	변 경 없 음
	연장 1,350 미터	연장 1,450 미터	
	광로 71 호	폭 100 미터	폭 100 미터
광로 55 호	연장 550 미터	연장 550 미터	(858 평 면적 증가)
	폭 50 미터	폭 50 미터	변 경 없 음
연장 1,150 미터	연장 1,150 미터		
광 장	20,000 제곱미터	20,000 제곱미터	변 경 없 음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마. 착공 및 준공예정일 : 78.10.-86.12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
사.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 명 : 별첨

아. 관계도면 : 별첨

변 경 토 지 조 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일시지 (평)	당초편입 지적(평)	추가편입 지적(평)	주소	성명	비고
262	경기·시흥 과천·관문리	45-1	전	1,064	169	419	서울시 양복구동 신동 5가 172-13	김현태	면적 증가
265	경기·시흥 과천·관문리	48-1	합	88	40	18	경기·시흥·과천 관문리 124	김순재	"
1558	"	274-4	전	255	-	77	국유지	배무부	
1559	"	274-5	전	384	-	344	"	"	
소계						858			
총	변경증편입면적 = 당초편입면적 + 추가편입면적								
	1,461,034.7			1,460,176.7		858			
계	(1,559 필지)			(1,557 필지)		(2필지)	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3 호

1980. 5.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사업(공원)공사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 (80. 4.7) 로 도시계획사업(공원) 실시 계획 인가된 관¹¹ 망우공동묘지 순환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동법제57조의 2,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 12.10)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사업시행지 : 망우공동묘지공원(망우동 산 57번지)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망우공동묘지 순환도로 포장공사
3. 사업의규모 : 순환도로 콘크리트 포장 195.9 휴게소 1개소(자연상태공지정리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(동대문구청장)
5. 사업의착공 및 준공년월일 : 1980.3.3. - 1980.4.30.

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

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
7. 공사완료도면 : 생략

수 용 토 지 지 번 조 서

번호	위 치	지 목	지 적	소유자 (등 기 상)	
				주 소	성 명
1	망우동산 57-1	임야	116,826	경 기도	(미 등 기)
2	" 산 57-3	"	673,189	"	"
3	면목동산 1-1	"	201,942	경 성 칭	(서 울 시)
4	구리읍교문리산 84-1	"	158,777	(미 등 기)	(미 등 기)
5	"	"	185,455	"	"

수 용 건 물 조 서

번호	위 치	구 조	용 도	수용평수	소유자	
					주 소	성 명
1	망우동산 57	부력기와	주거용	17 평	산 57	이 태 영
2	"	"	"	8	"	정 종 복
3	"	"	"	7	"	정 종 덕
4	"	"	"	19	"	김 성 달
5	"	"	"	10	"	송 순 광
6	"	"	"	17	"	엄 중 현
계				78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4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4 조에 의 한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다음과

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0. 5. 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번호	제조구분	취소사유
법 전 사	구로391-12	남기옥	1-7-67 1-8-54	전열기구류 전동력용용기구류	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 조 위반
홍아산업	고척동 173-16	심영식	1-6-20	교류전동기구류	"